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장기구득기관 업무 구체화 〉

■ 장종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16325호)

2026. 3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신은호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장기구득기관 업무 구체화(안 제20조제1항)	2

I. 개요

1.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16325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장종태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6. 1. 26.

(3) 회 부 일 : 2026. 1. 27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·
및·뇌사판정대상자의·파악과·관리, 뇌사판정·및·장기·적출절차의 진행·
지원, 장기등·기증·설득·및·장기등기증자와·그·유족에·대한·관리·및 지원,
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·통계의 관리,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·연구
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
·통계의 관리,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
명시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
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).

Ⅱ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장기구득기관 업무 구체화(안 제20조제1항)

가. 개정안의 내용

□ 개정안은 안 제20조제1항 각 호를 신설하여 현행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제1항).

- 안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현행 제2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구득기관의 기존 업무를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
- 같은 항 제4호·제5호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새롭게 규정

현행	개정안
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,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,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</u> 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	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1. <u>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</u> 2. <u>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</u> 3. <u>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</u>

② ~ ⑧ (생략)	4. <u>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·통계의 관리</u> 5. <u>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</u> 6. <u>그 밖에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</u>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

나. 검토의견

□ 개정안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현재 장기구득기관¹⁾이 장기 기증 업무와 연관하여 수행하고 있는 정보·통계 관리 및 조사 활동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.

- 업무 범위 명확화, 관련 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□ 첫째, 안 제20조제1항제4호·제5호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되는 장기구득기관의 업무가 현행법에 따른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²⁾의 사업과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

1) 법 제20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지정되어 있음.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,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,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2)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음.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① 장기등의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

이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
필요 시 각 주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개정안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신규 업무(안 제20조제1항제4호·제5호)
장기등 <u>기증에 관한 정보·통계의 관리</u> 장기등 <u>기증 관련 조사·연구 및 교육</u>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(법 제6조제2항제2호·제4호 ³⁾)
장기등의 <u>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</u>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<u>기증·이식 관련 교육</u>
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업무(법 제10조제2항제2호·제4호 ⁴⁾)
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 결과에 관한 <u>자료의 관리</u> 장기등의 <u>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·통계의 관리 및 홍보</u>

□ 둘째, 개정안은 안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같은 항 제6호에서 “그 밖에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를 장기구득기관의 업무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.

그런데 현행법 제20조제8항⁵⁾에서 “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0조⁶⁾는 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장기구득

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(이하 “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을 두되,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

- 3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 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 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- 4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)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2.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관리,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결과에 관한 자료의 관리
 4.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·통계의 관리 및 홍보
- 5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⑧ 장기구득기관의 지정 절차,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6)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(장기구득기관의 업무)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장기구득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기관의 업무”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.

- 이를 감안할 때, 개정안 시행 시 현행법령의 규정 범위와 중복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, 안 제20조제1항제6호 또는 현행법 제20조제8항의 자구 정비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다. 관계기관 의견

- (보건복지부·한국장기조직기증원) 장기구득기관이 실제 수행 중인 장기 기증 관련 자료 관리 및 조사 기능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,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과 체계적 관리, 공적 책임성 강화 및 생명나눔 문화조성 역할의 확대 등이 기대됨.

문 의 처

02)6788-5509

-
1.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검체(檢體)의 보관
 2. 장기등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
 3.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뇌사추정자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여부 확인
 4.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